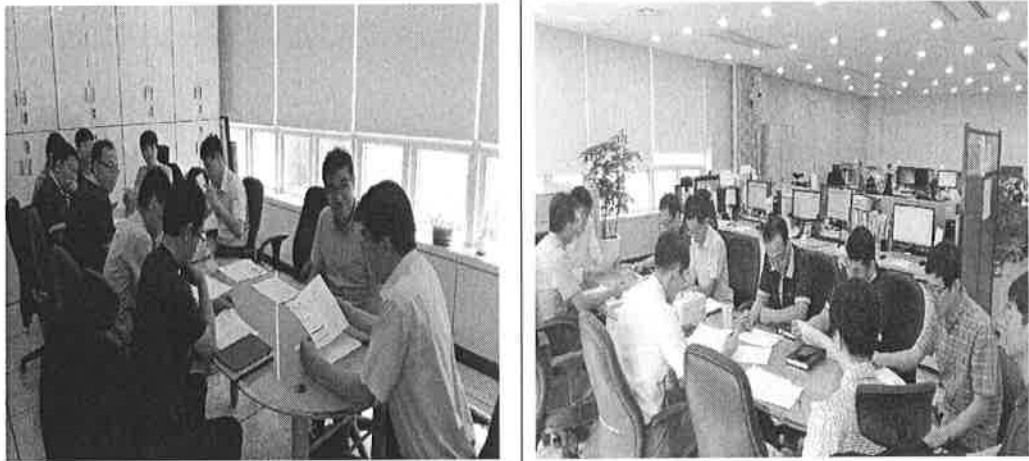


청탁금지법 교육일지

[부서명 : 전자처]

교육일시	2017.08.04.(금)		교육시간	1시간
강 사	전자처장		교육장소	사무실
교육참석	구 분	인 원	전파교육자	교육제외자
	교육대상	15	※마성필(출장), 권기형(휴가), 고석만(휴가), 김대형(휴가)	
	교육실시	11		
교육제목	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 교육			
교육내용	<청탁금지법의 이해> 1.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			
	공공기관	적용대상O		적용대상X
	행정기관	임기제공무원 공중보건의사,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		기간제 근로자, 무기계약직근로자
	공직유관단체	기간제,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		용역업체 직원
	언론사	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		프로그램 외주제작사
	학교	운동부감독, 코치 총장, 학장, 교수 등 기간제 교사, 유치원 교사		방과후교사, 겸임교원, 명예교수
2. 부정청탁의 금지 -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				
3. 금품 등의 수수 금지 -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(1)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(2)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의례,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				

	<p>(3)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받는 금품등</p> <p>(4)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</p> <p>(5)직원상조회,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</p> <p>(6)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</p> <p>(7)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</p> <p>(8)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</p> <p>4.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</p> <p>- 신고접수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해당 공공기관, 감독기관, 감시원 등)</p> <p>5. 사례 및 판례</p>
<p>교육사진</p>	

교육참석서명부

연번	직위	성명	서명	연번	직위	성명	서명
1	처장	송재찬	송재찬	9	과장	권기형	권기형
2	부장	최진수	최진수	10	과장	김대형	김대형
3	부장	윤주길	윤주길	11	과장	임유신	임유신
4	차장	이효구	이효구	12	대리	공태식	공태식
5	차장	마성필	마성필	13	대리	한두희	한두희
6	차장	조현문	조현문	14	주임	이정일	이정일
7	차장	차경민	차경민	15	사원	이민수	이민수
8	과장	고석만	고석만				